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성남세관장·과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을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과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으로, 같은 항 단서 중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을 “울산세관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3명(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06”을 “4,9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06”을 “4,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29”를 “4,538”로, 전문경력관 “371”을 “37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세관장) ① (생 략)	제23조(세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공항세관장 ·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인천세관장 · 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성남세관장 · 파주세관장 · 경남서부세관장 · 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u> 다만, <u>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 ----- ----- ----- ----- <u>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 · 파주세관장 · 경남서부세관장 · 전주세관장은-----.</u> ----- <u>울산세관장</u>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 략)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u>	③ ----- ----- <u>3명(6급 2명, 7급 1명)-----</u> ----- ----- -----

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 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06</u>	<u>4,920</u>	+14
일반직 계	<u>4,906</u>	<u>4,920</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29</u>	<u>4,538</u>	+9
전문경력관	<u>371</u>	<u>376</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